

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1~42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11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져 함.

주요골자

-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
 -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함

개정근거

-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
- 행자부고시 제2000-137호

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다음에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

“별표1”의 제7호 부동산에 관한사항중, (1) 개별공시지가확인 및 (2)토지(임야)대장등본지가병기발급란의 기준을 각각 “당해년도 1회 공시 기준(1필지)”로 하고, 비고란을 각각 “동일필지 당해년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제5조(징수방법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				제5조(징수방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재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</u>				
<별표 1> 재증명등 수수료 요율표					<별표 1> 재증명등 수수료 요율표				
구	분	기준	요금	비고	구	분	기준	요금	비고
(1)개별공시지가확인		<u>1필지</u>	500	<u><신설></u>	(1)개별공시지가확인		당해연도1회 공시기준 (1필지)	500	동일필지당해 년도공시일자 별추가분200
(2)토지(임야)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		<u>1필지</u>	300	<u><신설></u>	(2)토지(임야)대장 등본지가병기발급		당해연도1회 공시기준 (1필지)	300	동일필지당해 년도공시일자 별추가분200